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
----------	-----

2023. 10. 12.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9. 27. 이동호 의원 등 14명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2.)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가.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관련 규정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사업(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및 전산관리시스템(안 제8조 및 안 제9조)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및 국가 규정의 준용(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4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7조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sup>1)</sup>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현재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은 해당 법령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제12조<sup>2)</sup>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통합하여 후생복지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독자적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의원과 관련한 사항은 변동이 없음.

1)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10.8>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제12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등) 구청장은 강남구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22.7.8.>

- 참고로 ‘후생복지제도’는 직원동호회 지원, 해외 배낭여행, 출산 축하금, 각종 격려금과 같이 복지포인트 차감이 없는 사업이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후생복지제도의 범주에 포함되나 콘도 및 휴양소 이용, 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등과 같이 복지포인트가 차감되는 사업을 의미함.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정의)제3호 중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은 ““맞춤형 복지제도”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나 ‘(적용범위)’는 ‘(적용 범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1항은 원칙을, 제2항은 제1항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규정으로 보이는 바 <예시><sup>3)</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같은 항 제1호 중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병역휴직, 노조전임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계발휴직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음. 제3항에서는 의회 의원에게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의원에게 적용되는 의회비 예산과목을 12가지 경비로 제한하고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예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룹	편성목	설 정 ( 통계목 포함 )
200	205 의회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li> <li>2.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과 관련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는 이를 계상할 수 없음</li> <li>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서 선입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li> <li>4. 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li> <li>5.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정한 금액</li> </ol>
	205 의회비 (12가지 경비 유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li> <li>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li> <li>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li> </ol>

- 한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의회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의회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의정비, 의원상해보상금 등 다른 제도<sup>4)</sup> 운영의 취지 및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보임.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 정 ( 통계목 포함 )
200	201 일반운영비	<p><b>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b></p> <hr/> <p>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정무직, 공무원(무기계약) 포함)                      -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 및 보수(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예산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여 편성</p> <p>2.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은 불가</p>

- 안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제2항 중 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업무성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예시>5)와 같은 규정은 복지제도의 중요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제1항은 조문이 중복기재 되어 <예시>6)와 같이 조문을 정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서는 20가지 유형의 후생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나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구내식당 운영,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등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일부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만, 제17호 ‘단체보험’은 ‘단체보장보험’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

5) <예시>

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6) <예시>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혜적 혜택을 주는 지원이므로 심의위원회보다는 <사례><sup>7)</sup>와 같은 운영협의회 형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예시><sup>8)</sup>와 같이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3항에서는 위원 구성을 5명 이내로 하고 있는 바 적정인원인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4항에서 위원 구성을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소속 공무원도 참여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또한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면 되므로 의장 추천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제5항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례><sup>9)</sup>와 같이 연임을 계속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법령 입안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제9항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례<sup>10)</sup>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

7) <사례> 대전광역시의회, 창원시의회, 시흥시의회 등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8) <예시>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사례> 지방자치법

제39조(위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서는 의회 독자적인 후생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보이나 현재 집행부와 통합운영하고 있는 바 별도의 개발·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서는 집행부와 복지제도를 통합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2024년에는 일부 사업을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통합운영사업과 의회 자체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조례의 규정으로는 사업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바 통합 운영사업과 의회 자체사업을 분리하여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예시>11)와 같이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명확한 법적근거와 업무의 구분을 위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2024년도 의회 후생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음.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의회	구청(통합운영)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 <예시>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의장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모범·우수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친절·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6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	
7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결혼·신규임용 선물 제공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4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
15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상조서비스 등 지원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등 지원
16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17	소속 공무원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심리 상담 지원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지원
1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9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체육행사 지원	소속 공무원의 독서프로그램 지원
2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24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구분

- 또한 후단의 규정은 현재와 같이 후생복지사업 전부를 집행부가 통합 운영할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는 규정이나 구의회에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의회 자체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위탁의 법적근거

를 <예시><sup>12)</sup>와 같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제11조(국가 규정의 준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에서 법령이나 상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 없으며 상위법규에서 하위법규를 준용하지도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국가의 법령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은 바람직한 입안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아울러 포괄적인 준용방식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대상조문을 특정하여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면 <예시><sup>13)</sup>와 같이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인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의회 자체사업과 통합운영하는 후생복지사업의 법적근거 및 사업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법령 입안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12) <예시>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3) <예시>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235

제안연월일: 2023. 10. 12.

제안자: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후생복지에 관한 용어를 한글로 정의하고, 적용 범위 규정의 지원 범위와 후생복지사업 중 시행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하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변경하고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규정 조문을 정비하여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수정주요내용

- 가. 용어 등 미흡한 조문 정비 및 후생복지 지원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안 제3조)
- 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추가신설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제6조)
- 다.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중 시행 사업 일부 수정(안 제7조)
-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로 변경(안 제8조)
-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규정 수정 및 국가규정의 준용 규정 삭제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바. 경과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은 ““맞춤형 복지제도”란”으로  
하며, 제3호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 내에서”로 하고, 제4호 중 “복지포인  
트”는 “복지점수”로 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  
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회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사람”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직중인”을 “휴직 중인” 으로  
하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 중 “복지포인트”를 각각 “복지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안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7조제4호 및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제12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3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5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7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4호(중전의 제17호)중 “단체보험”을 “단체보장보험”으로 한다. 제18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9호를 제16호로 하며 제20호를 제17호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후생복지 제도”를 “후생복지제도”로,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그 운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같은 조 제3항의 “위원회”는 “협의회”로 하고, 제4항의 “의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의 “위원회”는 “협의회”로 각각 한다.

안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의장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 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u>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u>범위내에서</u>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p> <p>4. <u>“복지포인트”</u>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p> <p>②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p>	<p>제2조(정의) ----- -----.</p> <p>1. ~ 2. (원안과 같음)</p> <p>3. <u>“맞춤형 복지제도”</u>란 ----- ----- ----- <u>범위 내에서</u> ----- ----- ----- -----.</p> <p>4. <u>“복지점수”</u>----- ----- -----.</p> <p>제3조(적용 범위) ① ----- ----- -----.</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 ----- <u>소속 공무원</u>----- -----</p>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생략)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① (생략)
-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사항·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고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

-----.

1. -----  
----- 휴직 중인 -----
2. -----
3. -----  
---
4.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③ (원안과 같음)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① (원안과 같음)
  - ② -----  
-----  
-----
- 복지점수-----.

③ 복지점수-----  
-----  
-----

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 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

-----.

④ -----  
-----  
-- 협의회-----  
-----.

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원안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

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

5.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6.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결혼·신규 임용 선물 제공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

1. ~ 3. (원안과 같음)

<삭 제>

4. -----

-----

-----

5. -----

-----

6. -----

-----

---

7. -----

-----

-----

8. -----

-----

9. -----

-----

-----

10. -----

-----

-----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4.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

15.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

16.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1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심리 상담 지원

1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9.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 · 독서프로그램 · 체육행사 지원

11. -----  
-----  
-----

12. -----  
-----  
-----

<삭 제>

13. -----  
-----

<삭 제>

14. ----- 단체보장보험 -----  
-----  
-----  
-----

15. -----  
-----  
-----

16. -----  
-----  
-----

2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 장은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과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 -----  
-----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후생복지제도- 효율적인 -----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4. 그 밖에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

③ 협의회-----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

④ -----  
-----  
-----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⑤ -----  
-----.

⑥ 협의회-----  
-----  
-----  
-----.

⑦ 협의회-----  
-----  
-----  
-----.

⑧ 협의회-----  
-----  
-----  
-----.

⑨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11조(국가 규정의 준용) 이 조

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후생복

지제도는 관계 법령 및 「공무

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른다.

협의회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①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

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

우 의장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lt;신 설&gt;</u></p>	<p><u>제1조(시행일)</u> ----- -----.</p> <p><u>제2조(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u>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u></p>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

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원,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사항·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고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5.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
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7.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결혼·신규임용 선물 제

공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
  14.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심리 상담 지원
  15.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6.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독서프로그램·체육행사 지원
  1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

####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 ⑦ 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의장

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5
----------	-----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이동호·김형대·김민경·  
복진경·이향숙·안지연·  
우종혁·박다미·강을석·  
노애자·이성수·전인수·  
이도희·김광심 의원  
(이상14인)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관련 규정의 제정 필요성이 있음.
- 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남구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의회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다.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사업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및 전산관리시스템 (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마.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및 국가 규정의 준용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04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7조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원,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사항·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고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3. 해외 배낭여행 지원
4.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지원
5.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  
·국내외 시찰
6.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8.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9.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10.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결혼·신규임용 선물 제공
1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3.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  
험 프로그램 운영
14.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지원
15.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
16.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및 관리
17.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비용 지원, 정신·심리 상담 지원

18.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19.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독서프로그램·체육행사 지원

2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과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의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국가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후생복지제도는 관계 법령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의 기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